

의안번호	제 175호
의 결 년 월 일	1999. 8. . (제163회 임시회)

충청북도의의회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년월일	1999년 8월 23일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5
----------	-----

제안년월일 : '99. 8. 23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 공인중 청인과 직인의 사용구분을 명확히 하고 직인 종류중 “특별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하여 사용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충청북도의회의 공인중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충청북도의회의장, 위원회위원장,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토록 사용구분을 명확히 하고 충청북도의회 직인 종류중 “특별위원회위원장”을 추가하여 사용근거를 명시함.

3. 근거법령

- 사무관리규정 제35조

4. 첨부

-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 관계법령 1부.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인은 충청북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충청북도의회 의장 및 위원회위원장,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제2조 제2항중 제2호의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을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종류)①공인은 충청북도의 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p> <p>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북도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p>③ - ④ (생략)</p>	<p>제2조(종류) ①공인은 충청북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충청북도 의회의장, 위원회위원장,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문서에 사용한다.</p> <p>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각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 위원회위원장 3. (현행과 같음) <p>③ - ④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사무관리규정]

제35조 【종류 및 비치】 ①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